

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 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 조 (목적)중 "소속시장 군수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"를 "소속시장 군수 및 출장소장 소방서장에게 위임함으로써"로 한다.

제 2 조 (권한의 위임사항)중 "시장 군수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."를 "시장군수 출장소장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"로 하고, 별표중 소방과 소관의 위임사무를 별지와 같이한다.

제 5 조 (위임 및 처리의 금지)중 "시장 군수 출장소장"을 "시장 군수 출장소장 소방서장"으로 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이 조례는 1992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규정)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조례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.

③ (소방과 소관 사무의 수입기관)이 조례의 시행으로 제2 조 별표 제1 호내지 제52 호의 소방업무 수입기관은 소방서가 설치된 지역은 관할 소방서장이, 소방서가 미 설치된 지역은 관할지역의 군수가 된다.

권 한 위 입 사 무

(별 표)

분야별	입법번호	사 무 명	근 거 법 령
소방과	1	· 소방설비업면허 변경신고	<개정소방법(법률 제 4419호 91.12.14)의 제3조, 부칙 제1조, 제2조 근거> · 소방법 제42조의 5 동법시행규칙 제18조
	2	· 소방설비기사의 신고	· 동법 제42조의 14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4 동법시행규칙 제21조
	3	· 화재의 예방조치 명령권	· 소방법 제4조
	4	· 소방대상물의 검사권	· 동법 제5조
	5	· 소방활동에 필요한 조사권	·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, 제3항
	6	· 소방대상물의 기수명령권	· 동법 제7조
	7	· 건축허가등의 동의권	· 동법 제9조
	8	· 방화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	· 동법 제10조, 동법시행규칙 제5조
	9	· 공동방화관리대상지정 및 협의사항 신고	· 동법 제11조
	10	· 소방관계자의 교육 미필자에 대한 해임명령 및 해임 권고권	· 동법 제70조의 9 제2항
	11	· 방화관리자등의 실무교육	· 동법 시행규칙 제73조
	12	· 방염우처리 물품에 대한 방염성능의 검사권	· 동법 시행규칙 제 9 조
	13	· 위험물의 임시저장, 취급 승인권	· 동법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의 2

분야별	일련 번호	사 무 명	근 거 법 명
소방과	14	·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 허가권	· 소방법 제15조 · 동법 시행령 제36조 · 제37조 · 동법 시행규칙 제48조
	15	· 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취급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	· 동법 제18조 · 동법 시행규칙 제56조
	16	· 예방규정의 인가권	· 동법 제20조 · 동법 시행규칙 제59조
	17	· 위험물 제조소등의 감독권	· 동법 제22조
	18	· 위험물 제조소등의 허가취소, 사용정지 명령권	· 동법 제23조
	19	· 무허가 위험물 시설등에 대한 조치 명령권	· 동법 제26조
	20	·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관한 권한	·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2
	21	· 위험물제조소등의 양수신고	· 동법 제17조 · 동법 시행령 제38조 · 동법 시행규칙 제52조
	22	· 자체 소방조직의 지도, 감독권	· 동법 시행규칙 제60조
	23	· 소방시설 설치유지에 관한 명령권	· 동법 제29조 제2항
	24	· 소방시설기준적용의 특례에 관한 권한	· 동법 제30조 · 동법 시행령 제24조
	25	· 소방설비공사의 시공신고 및 완공 검사권	· 동법 제42조의 12 ·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3조
	26	· 화재 위험경보 발령권	· 동법 제44조 제1항
	27	· 화재 위험 경보발령시 불의 사용 제한권	· 동법 제44조 제2항
	28	· 화기취급의 금지, 제한권	· 동법 제45조
	29	· 화재 경계지구에 대한 소방상 조치 명령권	· 동법 제46조 제2항 · 동법 시행령 제30조
	30	· 방화경계구역의 설정권	· 동법 제52조
	31	· 방화경계구역 출입금지 제한권	· 동법 시행규칙 제45조
	32	· 소방응원 요청, 지휘권	· 동법 제53조 · 동법 시행령 제31조

분야별	임권 번호	사 무 명	근 거 법 령
소방과	33	· 소화종사 명명권	· 소방법 제 54조
	34	· 소방대상물봉에 대한 강제처분권	· 동법 제 55조
	35	· 화재로 인한 피난명명권	· 동법 제 56조
	36	· 화재현장의 급수유지의 긴급조치권	· 동법 제 57조
	37	· 소방용수시설의 지정권	· 동법 제 42조 ·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
	38	· 화재 원인과 피해재산 조사권	· 동법 제 58조
	39	· 강제조사권	· 동법 제 59조
	40	· 경찰에 의하여 체포된자에 대한 조치권	· 동법 제 60조
	41	· 화재조사에 대한 상호협력	· 동법 제 61조 · 동법 제 62조
	42	· 청원소방원의 배치 결정권	· 동법 제 68조의 2. · 동법 시행령 제 42조 · 동법 시행규칙 제 45조의 2
	43	· 청원소방원의 지도, 감독	· 동법 시행령 제 47조 · 동법 시행규칙 제 45조의 4
	44	· 청원소방원의 직무교육 실시권	· 동법 시행규칙 제 45조의 3
	45	· 청원소방원의 운영관리	· 동법 시행규칙 제 45조의 6
	46	· 구급대의 편성 운영권	· 동법 제 70조의 10
47	· 구급대원의 임명권	· 동법 시행령 제 48조 제 2항	
48	· 구조대의 편성 운영권	· 동법 제 70조의 11	
49	· 구조대원의 임명권	· 동법 시행령 제 49조 2 제 2항	
50	· 구조활동의 지원요청권	· 동법시행령 제 49조 3	
51	· 청문권	· 동법 제 70조의 12	
52	· 과태료 부과, 징수권	· 동법 제 78조 제 2항. · 동법시행령 제 64조	

신구조문대비표

=====

조 례 명 :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

현	정
<p>제1조(목적)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95조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<u>소속시장, 군수 및 출장소장</u>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</p> <p>제2조(권한의 위임사항)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<u>시장, 군수, 출장소장</u>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</p> <p>제5조(위임 및 처리의 금지)<u>시장, 군수, 출장소장</u>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 하고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.</p>	<p>제1조(목적)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95조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<u>소속시장, 군수 및 출장소장, 소방서장</u>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</p> <p>제2조(권한의 위임사항)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<u>시장, 군수, 출장소장, 소방서장</u>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</p> <p>제5조(위임 및 처리의 금지)<u>시장, 군수, 출장소장, 소방서장</u>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 하고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.</p>

신구조문대비표

(소방과 소관사무)

일련 번호	현행		개정	
	사무명	근거법령	사무명	근거법령
1	(생략)	소방법 제42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8조	(현행과 같음)	소방법 제42조의 5 동법시행규칙 제18조
2	(생략)	동법 제42조 제12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	(현행과 같음)	동법 제42조의 14 제1항 동법시행령 제28조 의 4 동법시행규칙 제21조
3	신설		.화재의 예방조치 명령권	소방법 제4조
4	신설		.소방대상물의 검사권	동법 제5조
5	신설		.소방활동에 필요한 조사권	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, 제3항
6	신설		.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권	동법 제7조
7	신설		.건축허가등의 동의권	동법 제9조
8	신설		.방화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	동법 제10조, 동법 시행규칙 제5조
9	신설		.공동방화관리대상지정 및 협의사항 신고	동법 제11조
10	신설		.소방관계자의 교육 미필자에 대한 해임명령 및 해임 권고권	동법 제70조의 9 제2항
11	신설		.방화관리자등의 실무교육	동법 시행규칙 제73조
12	신설		.방염후처리 물품에 대한 방염성능의 검사권	동법 시행규칙 제9조
13	신설		.위험물의 임시저장, 취급 승인권	동법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의 2

일련 번호	현		개		정
	사	무	사	무	
	명	명	명	명	
14	신	설	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 허가권		소방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, 동법 시행규칙 제48조
15	신	설	위험물 취급주임 또는 위험물취급자 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		동법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56조
16	신	설	예방규정의 인가권		동법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59조
17	신	설	위험물 제조소등의 감독권		동법 제22조
18	신	설	위험물 제조소등의 허가취소, 사용정지 명령권		동법 제23조
19	신	설	무허가 위험물 시설등에 대한 조치 명령권		동법 제26조
20	신	설	위험물 제조소등의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관한 권한		동법 시행령 제37조의 2
21	신	설	위험물 제조소등의 양수신고		동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
22	신	설	자체 소방조직의 지도, 감독권		동법 시행규칙 제60조
23	신	설	소방시설 설치유지에 관한 명령권		동법 제29조 제2항
24	신	설	소방시설기준적용의 특례에 관한 권한		동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4조
25	신	설	소방설비공사의 시공신고 및 완공 검사권		동법 제42조의 1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3조
26	신	설	화재 위험경보 발령권		동법 제44조 제1항
27	신	설	화재 위험 경보발령시 불의 사용 제한권		동법 제44조 제2항
28	신	설	화기취급의 금지, 제한권		동법 제45조
29	신	설	화재 경계지구에 대한 소방상 조치 명령권		동법 제46조 제2항, 동법 시행령 제30조
30	신	설	방화경계구역의 설정권		동법 제52조
31	신	설	방화경계구역 출입금지 제한권		동법 시행규칙 제45조
32	신	설	소방응원 요청, 지휘권		동법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31조

일련 번호	현		개		정
	사 무 명	근 거 법 령	사 무 명	근 거 법 령	
33	신 설		.소화종사 명령권	.소방법 제54조	
34	신 설		.소방대상물등에 대한 강제처분권	.동법 제55조	
35	신 설		.화재로 인한 피난명령권	.동법 제56조	
36	신 설		.화재현장의 급수유지의 긴급조치권	.동법 제57조	
37	신 설		.소방용수시설의 지정권	.동법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	
38	신 설		.화재 원인과 피해재산 조사권	.동법 제58조	
39	신 설		.강제조사권	.동법 제59조	
40	신 설		.경찰에 의하여 체포된자에 대한 조치권	.동법 제60조	
41	신 설		.화재조사에 대한 상호협력	.동법 제61조 동법 제62조	
42	신 설		.청원소방원의 배치 결정권	.동법 제68조의 2. 동법 시행령 제42조 동법시행규칙 제45조의 2	
43	신 설		.청원소방원의 지도, 감독	.동법 시행령제47조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 4	
44	신 설		.청원소방원의 직무교육 실시권	.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 3	
45	신 설		.청원소방원의 운영관리	.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 6	
46	신 설		.구급대의 편성 운영권	.동법 제70조의 10	
47	신 설		.구급대원의 임명권	.동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	
48	신 설		.구조대의 편성 운영권	.동법 제70조의 11	
49	신 설		.구조대원의 임명권	.동법 시행령 제49조 2 제2항	
50	신 설		.구조활동의 지원요청권	.동법시행령 제49조 3	
51	신 설		.청문권	.동법 제70조의 12	
52	신 설		.과태료 부과, 징수권	.동법 제78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64조	